

- 안건조세총서, 기업경영회계·세무, 법인세법상세해설서
-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



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

과세표준	특례세율
0.6억원 이하	0.05%
0.6억원 초과 ~ 1.5억원 이하	3만원 + 0.6억원 초과분의 0.1%
1.5억원 초과 ~ 3억원 이하	12만원 + 1.5억원 초과분의 0.2%
3억원 초과 ~	42만원 + 3억원 초과분의 0.35%

※특례세율은 2026년 말 일몰 예정



퇴직연금 인출시 세금

원천	일시금 수령시	연금수령시	비고
사용자 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	퇴직소득세	연금소득세	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30% 감면, 분리과세
자기부담금 및 그 운용수익	기타소득세 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	연금소득세 (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세율 3.3~5.5%)	연간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. 소득·세액공제받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비과세



주요국 상속세 개정 현황

국가명	상속세율 조정
미국	• 2010년 유산세 최고세율 45% → 35% 인하
	• 2012년 유산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(50만 달러 초과시 35% → 100만달러 초과시 40%)
일본	• 2013년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 및 최고세율 인상 (기존 최고세율 50% → 개정후 55%)
독일	• 2010년 제2과세등급(형제자매, 양부모, 사위 및 며느리) 세율 인하 (기존 제2과세등급 최고세율 30% → 개정후 최고세율 15%)
국가명	상속세 공제액 조정
미국	• 2017년 기초공제액 순차적 인상 (2018년 1118만 달러 → 올해 1361만달러(180억원))
일본	• 2013년 상속세 공제액 조정
	• 기초공제 5000만엔 + (1000만엔×법정상속인 수)
	• 미성년자공제 6000만엔×20세까지 남은 연수 → 10만엔×20세까지(2022년부터 18세) 남은 연수
	• 장애인공제 6만엔×85세까지 남은 연수×10만엔×85세까지 남은 연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범위 확대
영국	• 2015년 기초공제액 32만5000파운드 유지 및 추가공제액 인상 (2017-2018년 과세연도 10만파운드 → 2021년 이후 17만5000파운드)